

2023년 제1회 울릉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제1회 울릉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11.

울릉군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예정인원	비고
총계				20명	
2023년 제1회 울릉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공업	일반기계	3명	
		녹지	산림자원	3명	
		환경	수질	3명	
		시설	일반토목	9명	
		방송통신	통신기술	2명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직렬 및 직급	직류	시험과목		시험시간
		1차	2차	
공업(9급)	일반기계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60분
녹지(9급)	산림자원	생물	조림, 임업경영	60분
환경(9급)	수질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60분
시설(9급)	일반토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60분
방송통신(9급)	통신기술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60분

※ 각 과목에서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시험문제는 울릉군에서 자체출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 평가기준 : 5개 항목(공무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거주지 제한

- 1) 2023.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내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 2023.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라. 자격(면허)증 제한(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직 급	직 렬	직 류	자격(면허)증	비 고
9급	공 업	일반기계	산업기사 이상	[붙임 3] 참고
	녹 지	산림자원		
	환 경	수 질		
	시 설	일반토목		
	방송통신	통신기술		

4. 시험 일정

시험 공고일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3.01.11.(수) ~ '23.02.06.(월)	'23.02.07.(화) ~ '23.02.10.(금) [4일간]	필기시험	'23.03.02.(목)	'23.03.11.(토)	'23.03.15.(수)
		면접시험	'23.03.15.(수)	'23.03.21.(화)	'23.03.24.(금)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은 울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할 예정이며, 개별통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2. 7.(화) ~ 2023. 2. 10.(금) 09:00 ~ 18:00

나. 접수처 : 울릉군청 자치행정과(2층)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FAX 제출 불가)

- 우편접수 주소 : (40222) 경북 울릉군읍 도동2길 66, 울릉군청 자치행정과(행정팀)

◇ 등기우편 접수는 응시원서 제출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원서 접수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접수처(054-790-6082)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붙임 1] 1부

◇ 사진(2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4.5) 탈모 상반신 사진

◇ 응시수수료(5,000원 상당) : 울릉군청 1층 민원실에서 「울릉군 수입증지」 구입

- 등기우편 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상당) 또는 응시수수료 동봉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2)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3)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공고일 이후 발급, 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1부
- 5)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또는 자격 취득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의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다' 참고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울릉군 주민복지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나’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응시원서에 집 전화, 휴대폰 번호 등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자는 시험기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마.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바.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착오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불합격자에 한하여 요청 시 원본 서류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 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인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시험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자.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울릉군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합격 사실에 대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카.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타.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될 수 있으며, 5년 후에도 울릉군 자체기준에 따라 전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파.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울릉군 홈페이지에 공고(게시) 됩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054-790-60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본인은 (2023년도 제1회 울릉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울릉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cm×4.5cm)사진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자격증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울릉군 수입증지 붙이는 곳

인

※응시번호		응시표 (2023년 제1회 울릉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3.5cm×4.5cm)사진으 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자격증		주민번호 앞자리		
2023년 월 일				
울릉군인사위원회위원장 인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① 「※」 표시가 되어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직급(응시분야)

－ 응시직급 : 응시하는 모집단위의 직급 기재 (예 : 시설 9급)

－ 응시분야 : 응시하는 모집단위의 분야 기재(세부분야가 있으면 세부분야까지)
(예 : 토목분야)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⑥ 수입증지란에는 울릉군 수입증지 날인

※ 울릉군청 1층 민원실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 오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울릉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 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화·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화·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및 요건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治工具) 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환 경	수 질	기술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수질관리 기사: 수질환경 산업기사: 수질환경
시 설	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 정보통신 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직군, 직렬 및 직류의 경우 소속 장관이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의 종류를 별도로 정한다.